

완전 도서정가제 ‘뜨거운 감자’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3월31일 서적 할인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서정가제란 발간된 지 1년 이내의 책에 한해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되 인터넷서점은 1년 이내의 책이라도 10% 범위내에서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2007년에 폐지되는 한시 규정이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서점의 10% 할인 예외 조항을 비롯해 마일리지, 쿠폰 등 유사 할인판매 등도 원천 봉쇄했다. 이에온·오프라인 서점의 이해관계가 얹히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찬반논의가 팽팽하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 우 의원은 “인터넷서점의 과당 할인경쟁으로 국내 영세 출판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지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국 중소서점 단체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에 따르면 전국 서점 수는 1997년 5407개에서 외환위

기를 거치고 인터넷서점이 활성화되면서 2000년 3357개, 2001년 2646개, 2002년 2328개, 2004년 2205개로 최근 몇 년간 크게 줄었다.

정책토론회 … 도서정가제 개정안 찬반 팽팽

개정안과 관련, 지난 4월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정책토론회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독자보호 및 출판산업 활성화’가 개최돼 각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부길만동원대 출판미디어과 교수,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정상우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사무총장, 최준영 문화연대 정책실장, 김성룡 교보문고 인터넷서점 상무이사,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또한 중소 출판 및 서점 관계자, 인터넷서점 등 관련 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함으로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출판·유통·서점…완전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에 도움

현행의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출판 및 서점 업계는 “인터넷 서점의 미일리지(누진제), 경품 등 변칙적인 추가 할인경쟁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국내 영세 출판 및 서점 업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완전한 도서정가제 실현을 요구해 왔다. 특히 발행 1년 이내 신간의 경우 인터넷 서점에 한해 일반서점보다 10%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료 배송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의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는 법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법제 정 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도서정가제를 실시한다”며 “인터넷서점의 10% 할인은 2003년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전자상거래 육성방안 의도가 깔린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도서정가제를 원치 않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2002년 기형적인 도서정가제를 통과시킨 것이다”며 “경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그저 소중하게 간직할 줄만 알았지 그것의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만방에 자랑하고 알리는 것에 그간 너무 인색해 왔다.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그간의 해외출판 저작물 수입 일본도에서 벗어나, 국내 출판 저작물을 적극 해외에 홍보하고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때가 되었다.

학자들도 도서정가제가 출판 문화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이며 완전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법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인호 대한출판문화협회 기획담당 상무는 “완전한 도서정가제에는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상품인 동시에 사회적 공공재로서 출판물의 특수성을 포

함하고 있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시장 논리의 잣대만으로 도서정가제를 부인하고 전면 할인 경쟁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과연 더싼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상무는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작가와 계약을 맺을 때 책값이 어느 정도여야 팔리겠다는 기준하에 정가를 책정한다”며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출판사는 시장에서의 할인율을 고려해 처음부터 높은 가격에 정가를 책정하게 마련이고 거품 가격이 생겨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의 경우 온라인 서점에 한해 일반 서점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한 제도이다”라고 전제한 후 “원론적인 시장경쟁 논리로 출판문화를 쇠퇴시키고 결과적으로 중소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법적으로 용인 또는 유도하는 것은 국가사회에 아무런 실익이 없는 탁상 법제다. 그동안 시행한 부분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다. 완전 도서정가제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길 바란다”며 완전 도서정가제의 전면 시행을 적극 주장했다.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우 예스24 사장은 “프랑스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도서 할인은 존재한다”며 “출판 및 서점 업계에서 주장하는 도서가 문화 상품이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간의 갈등을 가격규제를 통해 무마시키자는 의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서점 …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 권리 박탈

도서정가제가 산업보호와 소비자 이익보호 등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반대 주장도 팽팽했다.

인터넷서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상우 예스24 사장은 “프랑스 등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도서 할인은 존재한다”며 “출판 및 서점 업계에서 주장하는 도서가 문화 상품이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간의 갈등을 가격규제를 통해 무마시키자는 의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스크린쿼터제가 창작을 도모하는 영화인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영화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은 아닌 만큼 도서정가제 역시 마찬가지이다”라며 “중소 서점의 몰락이 인터넷서점의 할인 때문이라는 주장은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니 이를 규제하자는 과거 영국에서 제기됐던 구태의연한 발상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가 미국의 출판 자본의 압력이나 정부의 상거래 활성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며 현재의 갈등은 새로운 IT패러다임에 대한 반발현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 개정안은 소비자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 모임 … 소비자 시각에서 갈등 풀어야

소비자 대표로 나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은 책을 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투명한 출판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꾀력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도서정가제로 책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통질서를 살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일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준은 책을 출판하고 판매한다는 사업은 문화사업으로서 공공적인

성격을 지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책을 출판하고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일은 일반 공산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일과는 좀 달리 평가해야 할 중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 후 “소비자 중심에서 몇 가지 제안한다”며 “첫째, 적정한 도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할인가격이 전제된 거품가격을 빼야 한다. 둘째,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도서유통의 질적인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다양한 판매방식과 다양한 구매 패턴을 인정하고 위축되어 있는 중소서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서점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혁신해야 한다. 소비자의 욕구를 읽지 못하면 망하기 쉽다. 넷째, 도서정가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현재의 출판업계와 서점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소비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출판업계와 서점업계 그리고 인터넷 서점과의 갈등구조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각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이지 않는 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자리가 도서정가제를 통해 온·오프라인 서점간의 갈등이 종폭되는 장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출판문화 기금조성과 도서시장 확대 등 전체 출판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터넷 서점 … 개정안 · 토론회 편향성 반발

개정안과 정책토론회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인터넷 서점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정안과 정책토론회가 오프라인 서점을 겨냥해 마련됐으며 상대적으로 온라인 서점업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도외시됐다는 주장이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터넷 서점협의회는 지난 4월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돼 온 완전도서정가제는 많은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

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입법이 수차례 무산됐던 소모적인 논쟁이다”라며 “법안발의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서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한 것은 전형적 인 밀실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인터넷 서적 판매업체인 인터파크는 지난 4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전도 서정가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 경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박탈당할 것이다”라며 “생활의 여유가 없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도서를 구입해 문화생활을 영위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세계의 높고 두터운 벽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인접 국가에 우리의 저작물을 더욱 활발히 전하는 일이다. 중동과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고, 태평양을 넘어 미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을 교두보로 삼는 전략부터 우선 세워야 한다. 우리 저작물이 활발히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하고 일부 경제주체에게만 이익이 되는 발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음반, 비디오,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다른 문화상품은 재판매 가격을 지정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면서 유독 도서에 대해서만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서점이 상세한 도서정보와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도서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통라인을 대폭 줄여 오프라인 서점보다 더 비싼 값에 서적을 사서 소비자에게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갑준 차장〉

개 / 정 / 법 / 룰 / 안

제안이유

21세기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기반이 다양한 도서의 생산과 시장질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도서를 보다 저렴하고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보루이며 독서문화 창달과 출판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간행물을 유통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규정과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환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출판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된 「출판및인쇄진흥법」은 당초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게 전자상거래 촉진과 시장경쟁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형적으로 저정되어 오피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에 편향적으로 할인을 허용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유통질서의 혼란이 극심한 실정임. 또한 연차적으로 정기제 범위를 축소하여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시행중임. 따라서 협행 도서정가제의 시급한 개정을 통해 글로벌 지식경쟁 시대를 뛰발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출판진흥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법 제22조(정가표시및판매) 제2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종류와 유통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문화산업을 퇴보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안 제22조제2항).

나. 동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되는 간행물의 경우 정가의 1회 범위 안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판매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직·간접적인 할인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입법취지가 상실되고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잡지도 정가판매 대상에 포함(안 제22조제2항).

다. 법 제22조제3항의 예외 조항 중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조항은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도서의 대부분이 1년 이상 도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의 특성상 대부분의 도서가 재고의 개념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입법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출판사의 경영 압박과 서점운영에 혼란의 요인이 되므로 출판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동 조항을 삭제하여 정가 판매 범위에 포함(안 제22조제3항).

- 「기간이 경과(과월호 등)한 잡지는 예외 조항에 포함시키고 당월분은 정가 판매 범위에 포함(안 제22조제3항)」라. 지속적인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해 일반 공산품과 다른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5년 한시 규정을 삭제 함(안 법률 제6721호 부칙 제2조 삭제).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정가판매” 라 함은 사업자가 현금할인 및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의 유사한 형태의 할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기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1. 기간이 경과(과월 등)한 잡지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정가 또는 정가의 1회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를 “할인 판매를 한 자”로 한다.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1.~11.(현행과 같음)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생략)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기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가의 1회의 범위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2.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4.(생략) 제28조(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생략) 5.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 또는 정가의 1회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6.· 7.(생략)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현행과 같음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기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 ①현행과 같음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기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잡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1.기간이 경과(과월 등)한 잡지 2.사회복지시설 ----- 3.· 4.(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①----- 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현행과 같음) 5.----- 6.· 7.(현행과 같음) 법률 제6721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부칙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적용한다. 〈삭제〉